

은행은 채무자, 채무인수인 및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근저당권변경계약서

(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용)

피담보채권확정 후
그 채무인수에 따른
근저당권변경

20 년 월 일

인감대조

채 권 자
(근저당권자)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인
주 소

채 무 자 인
주 소

채 무 인 수 인 인
주 소

근저당권설정자 인
(소유권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)
주 소

제1조 채무의 인수

- ①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아래 표시 약정서(이하 “원약정서”라 합니다)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20 자 채무인수약정서로 그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.

원약정서상의 채무표시(20 년 월 일 현재)

구 분	1	2	3	4	5
약정서명칭	약정서	약정서	약정서	약정서	약정서
채 무 자					
채 무 액	원 금				
	이 자				
	지 연 배 상 금				
	부 대 채 무				
	합 계				

②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고,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원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.

제2조 피담보채무의 범위

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바 있는 아래표시의 근저당권(이하 “원근저당권”이라 합니다)은 제1조에 의한 채무인수로 말미암아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합니다.

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 표시

구 분		1	2	3	4	5
등기 · 등록	관 할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
	접 수 일 자
	접 수 번 호	제 호	제 호	제 호	제 호	제 호
	채권 최고액					
	물 건 목 록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
	순 위 번 호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

제3조 다른 계약조항의 효력

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원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조항은 그대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.

제4조 근저당권설정자(또는 제3취득자)의 승낙

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였습니다.

물건목록 및 순위번호

물 건 목 록	순 위 번 호	
	등기상순위	실제순위
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()통을 작성하여 채권자, 채무자, 채무인수인 및 근저당권설정자(또는 제3취득자)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.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계약서 1통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음.	
채 무 자	(인)
채 무 인 수 인	(인)
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	(인)